

# 임직원을 위한 2020 단체상해보험 Manual

**Viavi Solutions Korea** 



본 Manual 은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Marsh Korea 에서 작성된 참조자료로서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

# 단체보험보장내용

■ 보험기간: 2020 년 07 월 01 일 (16:00) ~ 2021 년 07 월 01 일 (16:00)

■ 보험사: 교보생명보험㈜, DB 손해보험㈜

■ **보장내용 :** (단위: 원)

■ 모장내용:		(단위:	권)			
구분		보	장내용		보장금액	보장대상
재해사망	보험기간 중 발생	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	인으로 사망 시		연봉 3 배	
제에서 8	■ 최소 1 억, 최대 5	억 + 연봉 0.4 배			[ 6 J III	
질병사망 및	질병사망	보험기간 중 질병으로	로 사망 시			
고도후유장해보장	고도장해보장	연봉 3 배				
	보험기간 중 발생	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	인으로 영구적 장	해시		임직원
재해장해	■ 장해등급에 따라 2 ■ 최소 1 억, 최대 5	가입금액의 3% ~ 100% 보 억	<b>보</b> 장		연봉 3 배	<b>1</b> 70
		로 진단 확정시 암 종류	별로 보장금액 지	급 (최초 1 회)		
암 진단비		자 및 재발, 전이암 제외 미내암, 기타피부암, 대장점	덬막내암 10%/ 경계·	성종양, 갑상샘암 30%	2 천만	
2 대 질병	보험기간 중 뇌출	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<u>의</u>	으로 진단 확정 시	(최초 1 회)	2 천만	
			질병, 재해, 출산(C	)코드)으로 입원 치료 시		
간호비	입원 1일부터 365 ■ 자동차사고 산재/	)일 안도도 모엉 사고, 건강보험 미적용 입 <sup>4</sup>	1 일당 3 만			
단조미		r 코드), 선천성 질환(Q 코	1 28 3 5			
	■ 건강상태 및 보건/					
		한 상해, 질병, 출산으로 계본인부담분 90%와 b		원이 시작된 경우 분의 80%의 합계액을 보장		
	(단, 상급병실료 차					
입원의료비 (실손)	■ 상급병실료 차액:	1 입원(원인)당 연간 1 천만 한도	017101			
(==)	■ 치아보철, 보존, 금					
	■ 한방비급여물리요 ■ 도수·체외충격파·					
				원하여 발생된 본인부담		임직원 배우자
	의료실비 (진료비 금액을 차감 후 보		공제기준금액과 의	<u> 외료기관별 공제금액 중 큰</u>		자녀
		<u>-으</u> 	최저공제금액	공제기준금액		
		의원급	1만	보상대상의료비의	통원 1 회당	
통원의료비	외래진료비	병원/종합병원급	1 만 5 천	급여 10% 해당액과	외래진료비	
(실손)	처방조제비	상급종합병원 처방전 1 건당	2 만 8 천	비급여 20%해당액의 합산액	25 만 한도 + 처방조제비	
		(00~K08) 비급여 제외	5 만 한도			
	,	등식치료, 비급여 주사료, 비	급여 MRI/MRA 제외(	별도의 특약으로 보상)		
		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		리료 제외		
		ዘ진료 180 회/ 처방조제 180 ⊦루에 의료기관에 2 회 이상		히르 가즈		
	- ㅇㄹㄴ 만만으도 ㅇ	i i 에 의표기한에 Z 되 이경	이 다 시표 시 중단 [	<b>当エ</b> セエ		

	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금액을 보상함								
	비급여 치료항목	공제 비율	최저 공제	연간보상한도	연간 보상횟수				
3 대 특정	도수 · 체외충격파 · 증식치료	111764		350 만원 한도	합산 50 회	좌측 도표	임직원		
비급여 치료비	비급여 주사료	비급여 30%	2 만원	250 만원 한도	50 회	과목 포표 참조	배우자		
(실손)	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	30%		300 만원 한도	-	日工	자녀		
	자기충영영영진단(MRK/MRA) 300 단천 단도 - 300 단천 단도 - 1 300 단천 단도 - 300 단천 단도 의료급여 대상 (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포함함) ■ 하루에 2 회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 각 진료행위를 1 회로 보아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 ■ 임신,출산 제외 ■ 비급여 주사료의 항암제,항생제(항진균제 포함),희귀의약품 제외(입원,통원의료비로 보상)								
의료비 제외사항 (공통)	■ 보상하지 않는 사항: 『실손의료 ■ 직장 또는 항문질환(I84, K60 ~ K ■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해(F04~F ■ 선천성 뇌질환(Q00~Q04), 요설: ■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본인의 ■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 ■ 백내장, 녹내장 수술시 비급여 인 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: 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분 ■ 자동차보험(공제포함) 또는 산자 ■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■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적용: 다른	(62, K64)의 99) 제외 (E 급(N39.3, N 자의적 요구 급실을 이용: 김공수정체(탄 효능에 부합 업의 본인부 (보험에서 5 보장대상 등	비급여 제오 t, 일부진단의 39.4, R32) : <sup>1</sup> 에 의해 발 <sup>2</sup> 하여 발생한 벤즈)비용 및 하지 않는 주 담 급여 대상 선상받은 의료 급액의 40%	이 경우 급여본인부 제외 생한 의료비 제외 응급의료관리료 저 비급여 렌즈삽입을 사제의 경우 치료 중 사전 또는 사후 로비 제외 (통원 시는 공제금	외 으로 인한 비급여 진 목적 소견이 있더라 환급이 가능한 금약 제외 후 40% 보상)	도 제외			
··· 사기 보자네요요 야과이 요한 바이라 기본 데브라이 기환은 다레브랑 야과에 이런 보자되니다									

- ※ 상기 보장내용은 약관의 요약 본이며,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단체보험 약관에 의해 보장됩니다.
- ※ 신규입사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기왕증력 여부에 따라 보장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

구분	7	·비서류	확인사항	발행처			
	보험금청구서 및		■ 보험금 청구인 난에 진료받은 분의 <mark>자필서명 必</mark> ■ 사고내용 기재				
공통서류	개인정보	보동의서 ( <mark>필수</mark> )	- 상해사고: 사고 일시, 장소, 사고경위 등 6 하 원칙에 의거 작성 요망 - 질병: 정확한 진단명 or 병명을 기재	별첨			
884111	진료비7	계산서 영수증	■ 항목별 금액이 보험급여 및 비급여로 구분되고, 수납금액 확인된 전산발행영수증	참고			
	(필수)		- 소득공제용 납입확인서, 카드영수증, 현금매출영수증, 수기영수증은 접수 및 처리불가 - 통원 진료 시는 진료일자 별로 영수증 제출				
간호비 입원의료	진단서 ( <mark>필수)</mark> 진료비세부내역서 ( <mark>필수</mark> )		■ 환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원사유(병명/ 질병코드), 입원기간 기재된 것 - 입퇴원확인서에 <mark>입원사유(병명/질병코드)가 있는 경우 진단서 대체 가능</mark>	병원			
비			■ 원무과에 별도로 요청하여 발급				
통원의료	계산서영수증 약제비		■ 약제비는 본인부담금 8 천원 초과건만 청구 가능	약국			
비	= 1	의사 처방전	■ 환자보관용을 발급받아 약제비 계산서와 함께 제출 함				
특정 비급여특 약	진료비세 <sup>!</sup>	- 부내역서 ( <mark>필수</mark> )	■ 원무과에 별도로 요청하여 발급	병원			
	의료기관 직원 할인 의료비 청구시				<ul> <li>의료기관 재직증명서 /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항목을 확인 할 수 있는 취업규칙</li> <li>병원 · 회사간 협약서 등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</li> </ul>	해당 기관	
기타	재	직증명서	■ 100 만원 이상 청구시 요청 될 수 있습니다.	회사			
	의료보험	험 납부확인서	■ 본인부담 상한제 확인을 위해 요청 될 수 있습니다.	국민건강 보험공단			

#### ■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안내

- ※ 정확한 보상 범위는 보험금 청구서류와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며, 상기의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지 않을 시,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  - 사망, 장해, 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실 경우 Marsh Korea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.
  - 의료비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

보험금 청구서류 준비	<b>&gt;</b>	Marsh Korea 로 e-Mail 또는 Fax 발송	•	서류심사 및 지급보험금 산출	•	7 일 내 (Working day) 직원계좌로 송금
임직원 본인		임직원 본인		보험사		보험사

#### ■ 보험금 접수 및 상담: Marsh Korea (마쉬코리아)

구분	담당자	전화	이메일	팩스번호
Claim Advisory	김정은 대리	02) 2095-4808	Mcare.korea@marsh.com	00) 707 4404
서류접수 및 구비서류문의		02) 737-1491		

주소	(07326)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38 층 Marsh Korea (MMB Claims)
업무시간	<b>평일</b> 09:00 ~ 12:00, 13:00 ~ 18:00 <i>(점심시간 12:00 ~ 13:00)</i>

###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

#### 1) 입원/통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인지 확인해 주십시오.

입원/통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실 때, 주의하실 점은 비급여 항목만 표시된 영수증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반드시 보험급여 항목에 최소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한 비용이 있어야 하며,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# 2) 실손의료비 보장 중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의 정의

『하나의 질병』	『하나의 상해』
①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 (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	① 발생 원일이 동일한 상해 (같은 상해로 2 회 이상 치료를
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, 하나의 질병으로 2 회 이상 치료를	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)
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)	② 하나의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 회
②질병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	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2 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
병행될 경우	경우 각각 1 회의 외래 및 1 건의 처방으로 봄
③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	③ 이때 공제금액은 1 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
상태에서 입원한 경우	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함

#### 3)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동의 필수 체크

2011 년 9 월 30 일자로 시행되는 『개인(신용)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규제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에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#### 4)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안내

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<u>본인이 실제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치료비 만을 보장</u>하는 상품으로 타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, 중복보장이 불가능하며 비례보상 됩니다. (2003.10.01 개정 보험업법 중 보험업감독규정)

※ 타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의료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.

#### [비례보상 예시: 입원의료비]

		시계 지부하	실손의료비 상품		각 보험사별 보상책임액 산출에 따른 비례보상율																
7	1분	실제 지불한 <u>르드커프비 응무</u> 입원 의료비용 보장금액 보장비율			보장비율	급여			비급여			총지급보험금									
		답면 의표비용	그	807	고양미골	보상책임액	비례보상율	지급보험금	보상책임액	비례보상율	지급보험금										
			단체	1.000만원	급여 90%,	100만원 x 90%	50%	100만원 x 50%	400만원 x 80%	47.1%	400만원 x 47.1%	2,382,353원									
		500 만원	500 마워	500 만원	500 만원	500 만원	500 만원	500 만원	500 만원	500 만원	500 만원	보험	보험 1,000년 전	비급여 80%	= 90만원	50/0	= 50만원	= 320만원	47.170	= 1,882,353원	2,002,000편
	l원	(급여 100만원 +	개인	1.000만원	급여 90%,	100만원 x 90%	50%	100만원 x 50%	400만원 x 90%	52.9%	400만원 x 52.9%	2,617,647원									
의.	의료비	-	•	비급여 400만원)	보험	1,000인 전	비급여 90%	= 90만원	50%	= 50만원	= 360만원	32,9%	= 2,117,647원	2,017,047 전							
		5, B 5, 100C C)		합겨		180 만원	100%	100만원	680만원	100.0%	400만원	500만원									
1				0 / 1		100 []	10070	1000	000 L L	100.070	400 E E	3001111									

#### [비례보상 예시: 통원의료비 중 진료비]

	식제 지북하	실전의료비 상품 실제 지불한 통원 진료비용 보장금액 (종합전문요앙기관 사용예시) 최저공제금액				각 보험사별 보상책임액 산 따른 비례보상율	출에	
구분	통원 진료비용				공제금 적용	보상책임액	비례보상율	총지급보험금
통원 의료비	30만원 (급여 5만원+	단체 보험	25만원	급여 10%, 비급여 20% (최저공제 2만원)	급여 5만원 x 10% = 5천원 비급여 25만원 x 20% = 5만원 총 공제금 5만5천원 (종합전문요양기관 최저공제금 2만원보다 큰 금액인 5만5천원을 공제적용)	급여: 5만원 - 5천원 = 4만5천원 비급여: 25만원 - 5만원 = 20만원 총 24만5천원	46.7%	30만원 x 46.7% = <b>14만원</b>
	비급여 25만원)	개인 보험	30만원	1일 2만원	1일 2만원	30만원 - 2만원 = 28만원	53.3%	30만원 x 53.3% = <b>16만원</b>
				ioli	52만5천원	100.0%	30만원	

### 입원/통원의료비 제외사항

#### 1.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1)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, 보험수익자(보험금수령인), 계약자의 고의
- 2)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으로 인한 경우
- 3)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
- 4)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본인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

#### 2.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1)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2) 모터보트·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행사(연습포함), 시운전 (단,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중 발생한 상해는 보상)
- 3) 선박 승무원, 어부, 사공,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

#### 3.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1) 정신 및 행동장애(F04~F99). 단, F04~F09, F20~F29, F30~F39, F40~F48, F51, F90~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함

Code	질병분류	Code	질병분류
F04 ~ F09	뇌손상,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해	F40 ~ F48	신경성,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
F20 ~ F29	정신분열병,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	F51	비기질성 수면장애
F30 ~ F39	기분[정동] 장애	F90 ~ F98	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

- 2)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(N96~N98)
- 3) 선천성 뇌질환(Q00~Q04)
- 4) 비만(E66)
- 5) 요실금(N39.3, N39.4, R32)
- 6)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(I84, K60 ~ K62, K64)

#### 4.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<mark>관련법령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</mark>(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)
- ② 아래에 열거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
- 가. 건강검진(단,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)
- 나. 호르몬 투여(단,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)
- 다. 예방접종, 인공유산에 든 비용, 영양제, 비타민제, 보신용 투약, 성장촉진,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(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에 부합하지 않는 주사제의 경우 치료 목적 소견이 있더라도 제외)
-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
- 가.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

- 나.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(주사비), 점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
- 다. 모반(단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(Q82.5)은 보상)
- 라. 발기부전(impotence) 불감증,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(phimosis)
- 마. 단순 코골음(단, 수면무호흡증(G47.3)은 보상)
- 바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

- ④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
- 가. 쌍꺼풀수술(단, 안검하수,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상)
- 나.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축소술, 지방흡입술(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관련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'여성형유방증'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), 주름살 제거술 등
- 다. 유방확대술(단,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)
- 라.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
- 마. 안경,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;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도 적용 대상 임)
- 바.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봄)
- 사.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
- ⑤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과 수술, 불임복원술, 보조생식술(체내, 체외 인공수정 포함) 등
- ⑥ 의치,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렌즈, 보청기, 목발, 팔걸이(Arm Sling),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(단,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)
- ②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(TV 시청료, 전화료, 각종 증명료 등)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, 간병비
- ⑧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(단,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)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
- ⑩ 자동차보험(공제포함)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(단,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선 일부 보상)
- ⑪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
- ⑫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
- 가. 임신 전 진료 및 검사, 출산이전의 양수검사, 기형아검사
- 나.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, 영양제, 비급여주사료
- 다.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
- ⑬ 치과치료(K00~ K08)
- 가. 치아보철, 보존, 금관, 틀니,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
- 나. 통원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
- ⑭ 한방치료
- 가. 한방비급여물리요법(수기요법, 전자요법, 온열요법, 추나요법 등) 및 차멀미, 비만,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

침술 (단,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'의사'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)

- 나.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
- 다. 통원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
- ⑤ 가입 전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제외

#### 5.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(단 특정 비급여 치료 가입 시 특약형으로 보상함)

- ① 도수치료. 체외충격파,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
- ② 비급여주사료 [단, 항암제 및 항생제(항진균제 포함), 희귀의약품은 보상 함]
- ③ 자기공명영상진단(MRI, MRA)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(조영제, 판독료 포함)
- ④ 위의 ①,②,③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(공제포함)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

※ 상기 사항은 약관의 요약 본이며,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단체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됩니다.